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목 차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등 안내	3
III. 전형료	6
IV. 수험생 유의사항	8
V.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10
VI. 제출서류	13
VII. 면접 및 실기고사	16
VIII.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17
IX. 기타	18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참고사항	
• 등록금 안내	
• 장학금 안내	
• 기숙사 안내	
• 캠퍼스 안내	
X. 각종 서식	21
• 입학원서 양식	
• 종합기록표	
• 전형료 환불 신청서	
• 전형료 반환 신청서	
• (최종합격자만 제출)LETTER OF CONSENT	
• (최종합격자만 제출)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최대인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¹⁾ (외국인 제외)	북한이탈주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어영문학과	1		
	독어독문학과	1		
	불어불문학과	1		
	일본지역문화학과	1		
	중어중국학과	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		
	물리학과	1		
	화학과	1		
	패션산업학과	1		
	해양학과	1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문헌정보학과	1		
글로벌 정경대학	창의인재개발학과	1		
	행정학과	1		
	정치외교학과	1		
	경제학과	1		
	무역학부	2		
공과대학	소비자학과	1		
	기계공학과	2		
	전기공학과	1		
	전자공학부	2		
	산업경영공학과	1		
	신소재공학과	1		
	안전공학과	1		
	에너지화학공학과	1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1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2		
	정보통신공학과	2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1		
경영대학	경영학부	2		
	세무회계학과	1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1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1	
		환경공학전공	1	
	도시공학과	1		
	도시건축학부	2		
생명과학 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	
		분자의생명전공	1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	
		나노바이오공학전공	1	
-	법학부	1		
예술체육대학	공연예술학과	1	-	-
합계		49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정원조정, 편제 개편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과(부)명, 소속 단과대학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교에 있는 모집단위라 하더라도 상기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1)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입학관리과에서 선발하며 외국인 입학전형(「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교육지원팀(TEL 032-835-9856)에서 선발합니다.

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등 안내

1.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① 인터넷 원서접수

-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접속, 표준공통원서 통합회원 가입, 모집요강 숙지

② 표준공통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 취급 위탁, 대입지원 위반 안내 확인 등에 대한 동의 및 공통원서 비밀번호 등록
- 공통원서항목 입력 후 저장하기

③ 본교 입학원서 작성

- 본교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전형일정, 전형별 세부사항 등 확인
- 공통원서 내용 확인, 전형 및 모집단위 선택, 사진 업로드 등

④ 전형료 결제(※ 결제 이후 “전형, 모집단위의 변경 또는 원서접수 의사 철회” 등 불가)

- 계좌이체, 카드, 휴대폰결제 등 결제 수단 선택 후 결제

⑤ 접수확인 및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페이지 「접수완료확인」 메뉴에서 「입학원서」와 「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 면접/실기고사 응시자는 「접수완료확인」 메뉴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나. 유의사항

- 지원자는 1개의 모집단위 및 지원자격 유형(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기재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하여 지원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교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번호가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후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기한(2023. 7. 11.(화) 17:00까지(7. 11.(화) 국내 우체국 소인분 인정 ※ 해외 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내 입학관리과로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처리되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마감일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려 접수 시스템이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 시한까지 원서접수를 못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즉시 입학관리과(032-835-0000)로 통보해야 합니다.
- 총원 합격 유선 연락 시 지원자 본인의 합격 유지 또는 포기 권한이 원서에 기재한 모든 연락처와 공유되고 있다고 간주하여 연락하오니 반드시 총원 합격 발표 전에 이를 확인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안내 및 유의사항
원서접수	2023. 7. 3.(월) 10:00 ~7. 7.(금) 16:00	- 인터넷 접수: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 ※ 단, 마감일(7. 7.(금))에는 16:00까지만 가능(KST 기준)
서류제출	2023. 7. 3.(월)~7. 11.(화) 10:00~17:00 ※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본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서류제출 마감일 7. 11.(화) 국내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해외 우편의 경우 7. 11.(화)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 입학관리과 (1호관 101호)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TEL. 032-835-0000
면접고사 (온라인 면접)	2023. 7. 28.(금)	- 대상: 재외국민(공연예술학과 외 모든 모집단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제외), 북한이탈주민(모든 모집단위) - 2023. 7. 21.(금): 입학 홈페이지에서 면접고사 세부사항 안내 - 2023. 7월초 온라인 면접 시스템 테스트 기회 제공 예정(대상자 별로 호환성,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 등 점검)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 (영상 제출기간)	2023. 7. 28.(금) 13:00~17:00	- 대상: 재외국민(공연예술학과 지원자) - 방식: 실기 영상 촬영 후 이를 온라인 제출 - 2023. 7. 21.(금): 입학 홈페이지에서 영상 제출 세부사항 안내
최초합격자 발표	2023. 8. 25.(금) 예정	- 합격증, 합격생 유의사항, 등록예치금 납부안내 등 본교 홈페이지 공고(개별통보 없음)
최초합격자 등록	2023. 12. 18.(월) 09:00 ~12. 21.(목) 16:00	-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기간 내 미등록(미입금)자는 불합격 처리
충원합격자 통보	2023. 12. 21.(목) ~12. 28.(목) 18:00	- 미등록(미입금)자 또는 입학포기(등록예치금환불)자 발생 시 충원 합격자 발표 - 차수별 충원합격 발표 일정은 p.5 “나. 충원합격자 발표” 참고
본 등록금 납부 및 지원자격 서류 보완 제출	본 등록금 납부: 2024. 2. 7.(수) 09:00~ 2. 13.(화) 15:00	- 등록(등록금납부) 기간 내 미등록(미입금)자는 불합격 처리
	(최종등록자)지원자격 서류 보완 제출: 2024. 2. 13.(화)~2. 20.(화)	- 최종등록자 대상 서류 제출 사항은 수시모집 최종 충원 마감 이후 재공지

□ 유의사항

- 일정은 한국 날짜 및 시간 기준이며 부득이한 경우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료 결제 후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지원자격 미달자도 접수 취소 불가)
- 서류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합격 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격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예치)금 납부

- 재외국민(정원외2%) 자격 유형에 한하여, 최초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예비순위자로 사전 공고합니다.(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안내>, <충원합격자 발표일정>도 함께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합격자 발표 안내공고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증과 등록(예치)금고지서는 지원자 본인이 합격자 조회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등록(예치)금은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간 내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 내 미등록자는 입학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초합격자 등록방법: 등록예치금 납부
- 등록(예치금납부)기간: **2023. 12. 18.(월) 09:00~12. 21.(목) 16:00**
- 등록방법: 고지서 확인 후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

- 등록예치금 납부 후 본 등록기간인 2024. 2. 7.(수) 09:00~2. 13.(화) 15:00에 등록금 잔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전액장학금 수혜 대상자도 등록 확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충원합격자 발표

- 재외국민(정원외2%)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입학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자로 충원합니다.(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단, 입학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충원하지 않거나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정원외2%) 자격 유형에 한하여 **예비순위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차점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공고하나 결원의 보충은 예비순위자 범위를 넘더라도 성적순에 의해 지정된 일정에 따라 충원합니다.**
- 예비순위자 및 불합격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해당기간 내 충원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는 등록 상황에 따라 전화를 통해 개별통보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에 입력한 연락처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합격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3회 통화 시도까지 연락이 안되는 자)에는 차순위자를 충원합니다.(연락처 변경: 입학관리과 ☎ 032-835-0000)

• 충원합격자 발표 세부일정

구분	충원발표(통보)일	등록(예치금납부)기간	본 등록금 납부기간
1차	2023. 12. 21.(목) 23:00까지	2023. 12. 22.(금) 09:00~15:00	2024. 2. 7.(수) 09:00 ~ 2. 13.(화) 15:00
2차	2023. 12. 22.(금) 23:00까지	2023. 12. 23.(토) 09:00~ 12. 24.(일) 15:00	
3차	2023. 12. 24.(일) 23:00까지	2023. 12. 25.(월) 09:00~ 12. 26.(화) 15:00	
4차	2023. 12. 26.(화) 23:00까지	2023. 12. 27.(수) 09:00~15:00	
5차(최종)	2023. 12. 28.(목) 18:00까지	2023. 12. 29.(금) 09:00~16:00	

Ⅲ 전형료

1. 전형료

지원자격		전형료(단위: 원)			
		일반관리비 등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합계
재외국민 (정원의2%)	전 학과 (공연예술학과 제외)	29,000	20,000	-	49,000
	공연예술학과	29,000	-	30,000	59,0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9,000	20,000	-	49,000
북한이탈주민		29,000	20,000	-	49,000

2. 전형료 환불·반환 안내

□ 전형료 환불·반환 기준

대상자	제출서류
환불대상자 공통서류	- 입학원서 1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전형료 환불신청서 1부 (입학안내홈페이지>수시모집>서식자료 다운로드 후 작성) -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구분	대상자	자격별 증빙서류	금액
환불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발급)	전액 (원서 접수 수수료 공제 후 환불)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래 서류 중 택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자격증명서(확인서)가 아닌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반환	⑤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액
	⑥ 본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⑦ 질병(생활질병 제외)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병원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전액
	⑧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면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해당 금액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⑤항 해당자 제출기한: 2023. 7. 11.(화) 17:00까지 - ⑥~⑦항 해당자 제출기한(재외국민 업무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제출): 2023. 11. 3.(금) 17:00까지
제출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 후 '전형료 환불 또는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입학원서' 각 1부 및 해당 증빙서류 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처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1호관 101호) 전형료 업무 담당자 앞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후 항목별 제출기간 내에 상기 환불·반환 관련 서류(증빙 서류 포함)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2023. 7. 3.(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전형료 환불·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전형료 반환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서류(병원 진단서 등) 제출 시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기 전형료 환불·반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IV. 수험생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가.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최대 지원 가능한 횟수는 6회입니다.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되며 교육대학은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됩니다.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시간 순서에 따라 6회 후의 접수는 취소 처리됩니다.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입니다.(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다. 본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 시 각 지원자격(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총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참고)본교 수시모집 복수지원표: 수시모집 총 6회 지원 중 아래 그룹별 1회씩, 총 4회까지 본교 지원 가능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유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실적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기타
전형	교과성적 우수자	자기추천	특기자	지역균형	기회균형	사회통합	서해5도 출신자	특수교육 대상자	실기 우수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 1개의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2. 이중등록 금지

가.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본교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합니다.

나.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해당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학과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내 최종적으로 1개 대학 또는 학과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수시모집 등록(예치)금을 최종적으로 다수의 대학(또는 학과)에 납부한 경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합격(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합격·입학 취소에 대한 사항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지원/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 마감 후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전형자료(원서, 제출서류, 사진 등)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 위·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또는 입학) 후라도 지원/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하며,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당시 해외 고교 졸업 예정자이었던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자격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재심사하며, 최종적으로 미충족한 경우에는 합격(입학) 사실이 취소됩니다.

마.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실기고사 미응시자 및 부분응시자 또는 부정행위자,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자,

서류 위·변조자 등은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위·변조된 서류(사진 포함) 제출, 허위 사실 기재, 대리응시,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을 방해한 자 등 부정행위자 및 관련자는 합격(입학)이 취소되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4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단, 한국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는 2024년 3월 졸업까지 인정됩니다.
- 사. 상기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전형료 또는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반환기준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초 및 충원 합격자 발표 후 등록안내 등을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해당 등록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입금)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 연락처 기재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차. 수시모집 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합격(또는 입학)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지원/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4. 기타 유의사항

- 가. 개인별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본교에서 수학 능력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합격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다. 원서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여 지원자격 미달 또는 합격 취소 처리된 경우, 추후 어떤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라.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꼭 확인하여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마. 제출서류 외 지원자격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증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관계 법령이나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릅니다.
- 아.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V.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1. 지원대상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2. 지원 자격(①재외국민~③북한이탈주민)」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북한이탈주민은 검정고시 가능)

2. 지원자격

구분	자격 기준
지원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u>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u> (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u>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u> 을 수료한 자
부모 (해외 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① 재외국민	<input type="checkbox"/> 해외 재학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input type="checkbox"/> 해외 체류 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및 방학을 포함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자격별 근거: 재외국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원서 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는 2024년 2월까지 졸업해야 하며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또한, 한국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까지는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 지원 자격 심사 관련 추가 안내

• 외국학교 학력 인정 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교여야 합니다.(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 교육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前) 과정 제외)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학력인정 비인가 학교 등의 학력인정방법(국내·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만 국내 검정고시 인정)
- 부모가 근무 및 체류한 국가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학교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재학 기간 인정기준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학력인정 비인가 학교 등의 학력인정방법(국내·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만 국내 검정고시 인정)
- 우리나라 학제(총 12년(24학기))에 준하는 국내·외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3월학제, 9월학제 등 학년 시작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 단순누락: 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의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학제상 월반: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으로 인하여 초·중·고 12년 과정 중 부족하게 된 학기(예: 전·편입시가 아닌 성적우수로 인한 월반)
 -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조기졸업(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으로 인하여 초·중·고 12년 과정 중 부족하게 된 학기(예: 12학년제 국가에서 조기졸업으로 G11-2에 졸업한 경우 발생한 2개 학기 누락)
-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 3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에 준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
 - 4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준하여 인정

- [예시 1, 2] 동일 학년(학기) 중복 이수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 단순 중복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학기 대체 불가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에도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부정·편법·약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중복학기(G2-2로G4-2 대체 가능)					A	A	A	누락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A	A	A	누락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기를 정상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원서 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는 2024년 2월까지 졸업해야 하며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하며 한국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까지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합니다.
- 지원자의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은 부 또는 모 근무자의 근무/사업/영업기간과 중첩될 때 인정됩니다.
 - ※ 근무/사업/영업 기간을 벗어난 재학 학기는 지원자격기간(3년) 인정 불가
- 근무자의 외국 근무/사업/영업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대학 과정 2학년 이상 수료 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대학 과정 1학년 이상 수료 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 이수 필수	-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12학년을 이수했다면 13학년제 고교에서 12학년까지 수료하여도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

• **(재외국민(정원외2%) 대상)근무 및 체류 기간 인정기준**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근무자는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절사 처리합니다.
-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국가에서 근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인정합니다.
- 해외근무자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에 명시된 해외 근무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의 해외 체류는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는 학력 및 출입국사실조회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근무 3년 조건은 부와 모의 해외근무를 합산하여 충족해도 됩니다.(예: 부의 1년 해외 근무와 모의 2년 해외 근무의 합산 인정)
-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자의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외국 국적자일 때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편부·모/재혼 등 가정의 지원자: 해당 지원자격기간 당시 부모를 기준으로 제출서류를 심사하며 부모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함(친권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지원자격기간(3년)에 해당한다면 재혼한 배우자 서류도 같이 제출) ※ 법적 서류에 명시된 일자 기준
공동친권의 경우 양육권자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 및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후 지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 본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릅니다.**

VI 제출서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은 최대한 지양 바랍니다.

1. 재외국민(정원외2%)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서식1)
②	종합기록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서식2)
③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지원자의 재학 기간, 성적, 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재학한 초·중·고교 모두를 제출해야 함
④	중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모든 외국 소재 학교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국내 및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는 성적·재학 증명서 대신 학생부로 대체 가능하며 영사확인 불필요 - 해당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발급 불가한 서류 발생 시 해당 학교의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공식 레터(Letter)나 관련 사항을 사유서(자유양식)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⑤	초등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외국학교의 경우,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School Profile 또는 Academic Calendar 함께 제출 권장
⑥	(부, 모, 지원자 기준(총 3부), 2023년 6월 이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인터넷발급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부모 이혼, 사망, 양육권 변동 등의 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⑦	(부, 모, 지원자 기준(총 3부), 2023년 6월 이후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 인터넷발급 가능 • 정부24: www.gov.kr ※ 지원자격기간 포함하여 발급
⑧	(부, 모, 지원자 기준 발급(총 3부))여권 사본	- 기간만료 전 유효한 여권
⑨	(부, 모, 지원자 기준 발급(총 3부))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사실확인서	- 인터넷발급가능 •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 체류사실확인서 안내: p.15 "13." 항목 참고
⑩	(지원자 기준, 2023년 6월 이후 발급)기본증명서	- 인터넷발급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해외 근무자 증빙 자료(해당 구분별 서류 제출)		
⑪	구분	제출서류
	해외 파견 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본사 발행, 해외 근무(파견)기간, 파견 국가 포함 · 해외지사설치신고(허가)서(원본대조필) 또는 해외직접 투자신고(허가)서(원본대조필) ※ 해외파견재직자 중 상사 주재원에 한함
	현지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재직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외 재직된 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외 근무한 사업체(회사) 관련 세금납부증명서(소득세 등)	- 선교사: 재직증명서 대신 법인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파견 국가 및 기간 명시) 및 해당 종교단체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법인등록증 사본 - 해외파견 공무원 또는 교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만 제출 - 현지 취업자: 재직된 회사의 세금납부이력 제출이 불가하면 개인 세금 납부 이력 및 급여명세서(근로소득세 이력, (재직 회사 발급)급여명세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함
⑫	(최종합격 후 제출)(부, 모, 지원자(총 3부))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최종합격 후 제출(서식6)
⑬	(최종합격 후 제출)학력조회동의서(외국 소재 학교 출신자만 제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및 최종합격 후 제출(서식5) ※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 제외

(해당자) 사유서: 조기졸업, 월반 등 지원자의 재학과 관련되거나 부/모 중 외국 국적자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사유서(자유양식)와 관련 증빙 제출

- 본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제출서류 준비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이후 지원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과정 중 일부 서류 미비자 또는 지원자격 증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자에 대해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청 기한까지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등록자만)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사본 서류 제출자, 졸업예정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충족 되는 자 등은 위 표의 서류 중 최대 ③, ⑥, ⑦, ⑩ 등을 고교 졸업 이후 재발급받아,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등록 후 일정 및 개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예정,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필수서류, ○: 해당자 선택서류)

제출서류 목록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고
① 입학원서	●	●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서식1)
② 종합기록표	●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서식2)
③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 증명서)	●	○ (고교졸업(예정)자만)	- 지원자의 재학 기간, 성적, 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모든 외국 소재 학교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국내 및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는 성적·재학 증명서 대신 학생부로 대체 가능하며 영사확인 불필요
④ 중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 해당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발급 불가한 서류 발생 시 해당 학교의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공식 레터(Letter)나 관련 사항을 사유서(자율양식)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⑤ 초등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 외국학교의 경우,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School Profile 또는 Academic Calendar 함께 제출 권장
⑥ (지원자 기준, 2023년 6월 이후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 사본	●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신청발급가능 • 정부24: www.gov.kr ※ 지원자격기간(12년) 포함하여 발급 - 기간만료 전 유효한 여권
⑦ (지원자 기준, 2023년 6월 이후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인터넷발급 가능 • 정부24: www.gov.kr
⑧ (지원자 기준, 2023년 6월 이후 발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¹⁾		○	- 해당자에 한함
⑨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는 필수 제출
⑩ 학력확인서		○	- 북한 고교 졸업자는 필수 제출 -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후 제출
⑪ (최종합격 후 제출) (지원자)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최종합격 후 제출(서식6)
⑫ (최종합격 후 제출) 학력조회동의서(외국 소재 학교 출신자만 제출)	●	○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및 최종합격 후 제출(서식5) ※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 제외

(해당자) 사유서: 조기졸업, 월반 등 지원자의 재학과 관련되거나 부/모 중 외국 국적자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사유서(자율양식)와 관련 증빙 제출

- 1)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본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제출서류 준비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이후 지원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과정 중 일부 서류 미비자 또는 지원자격 증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자에 대해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청 기한까지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등록자만)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졸업예정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자 또는 서류 항목 중 사본을 제출한 자 등은 위 표의 서류 중 최대 ③, ⑥(북한이탈주민은 ③만) 등을 고교 졸업 이후 재발급 받아,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등록 후 일정 및 개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예정,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원서 및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후 <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A4용지 규격에 맞춰 **제출 서류 목록 순서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등기우편제출: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1호관(대학본부) 101호(입학관리과)
- 방문제출: 본교 송도캠퍼스 1호관 대학본부 101호 입학관리과(032-835-0000)
- 제출기한: **2023. 7. 11.(화) 17:00까지**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은 최대한 지양 바랍니다.
 - ※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7. 11.(화) 국내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해외 우편은 7. 11.(화) 도착분에 한함, 소인미인정)
 - ※ 토요일 및 공휴일 서류 제출 불가

2. 서류제출 후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에서 서류 도착여부 확인 가능합니다.(서류(우편물) 도착 완료 후 시스템 반영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내외 소요됨)
3.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학관리과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거나, 합격자 발표 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원본대조필 서류 제출 안내

- 서류 제출 기한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본 서류 발급 등이 어려운 지원자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서류 제출 기간 내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유서(자유양식)**에 간단하게 작성하여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최종합격 후** 사본으로 제출하였던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5. 해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지정된 기관(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닐 경우,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직인)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p.18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참고사항 참조)
6.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임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 학년, 학기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조기졸업, 월반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유서 및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을 위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서류제출 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지원자는 지원자격 해당 기간 당시 법적 부모를 기준으로 부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관(법원 등)에서 발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2.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체류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바랍니다.**

- 체류사실확인서(다음 목록 중 택1,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제출)
 - ①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필)
 - ② 해당 국가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③ 해당 국가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④ 해당 국가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Ⅶ 면접 및 실기고사

□ 면접고사(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자/북한이탈주민): 온라인 면접으로 실시

※ 응시자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응시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점수	면접고사 100%(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시간: 1인당 10분 내외 최고 100점~최저 60점
대상	재외국민(공연예술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평가영역	전공이해도, 인성, 표현력(언어구사력)	• (블라인드 적용)고교 성적 자료는 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평가방법	면접위원 2명이 면접대상자 1명을 평가하며 평가영역별로 A~E등급 부여	
선발방법	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점자 처리기준 ① '전공이해도' 영역 평균점 순위자 ② '표현력(언어구사력)' 영역 평균점 순위자 ③ '전공이해도' 영역 최고점 순위자 ④ '표현력(언어구사력)' 영역 최고점 순위자
면접고사 과락제	면접위원이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판정 시 당초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결격 처리됨(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	

□ 실기고사(재외국민-공연예술학과): 실기 영상 촬영 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

구분	내용	비고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점수	실기고사 100%(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시간: 1인당 2분 내외 최고 200점~최저 0점 				
대상	재외국민(공연예술학과)					
평가영역	<table border="1"> <tr> <td>예술성과 창의성</td> <td>60%(120점)</td> </tr> <tr> <td>발전 가능성</td> <td>40%(80점)</td> </tr> </table>	예술성과 창의성	60%(120점)	발전 가능성	40%(80점)	
예술성과 창의성	60%(120점)					
발전 가능성	40%(80점)					
실기내용	자유연기 (연기자로서의 자질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연기)					
평가방법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 산출					
선발방법	평가영역별 평가 후 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실기고사 평가영역 중 '예술성과 창의성' 점수 순위자				
실기고사 과락제	평가위원이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판정 시 당초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결격 처리됨(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면접/실기고사 시 부모 또는 친인척의 성명이나 직장명(또는 직위나 직급 포함) 등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자, 고사에 불필요한 핸드폰 등 통신기기 소지자 및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II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1. 등록 포기 및 등록(예치)금 환불방법

가.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한 지원자가 입학(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에 입학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입학포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등록(예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등록(예치)금 반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포기신청: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 온라인 신청
- 환불금액: 납입 등록(예치)금 전액
- 신청마감: **2023. 12. 28.(목) 18:00까지**
- 환불과정: 로그인(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인증→신청 완료 후 내역 확인 및 출력→ 입학관리과 검토 및 승인→재무회계팀 환불 처리

수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유의사항

가. 합격자가 본교(또는 타 대학) 등록 이후 타 대학(또는 본교)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등록(예치)금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및 총원합격자 포함, 등록여부와 관계없음)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IX. 기타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관련 참고사항

가. 아포스티유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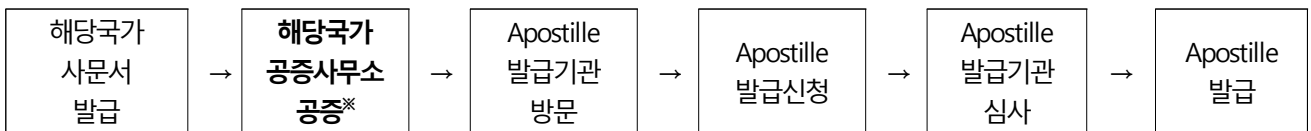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 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출입국심사과-8354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공문서



- 사문서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다.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기준일자: 2023. 3. 23.)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중동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관련 문의처: 외교부 02-2002-0251~2

2. 등록금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2024학년도 등록금은 추후 확정)

계열(신입생 기준)	1학기 등록금	비고
인문, 사회	2,046,000원	입학금 없음
이학, 체육	2,297,000원	
공학, 예술	2,574,000원	

3. 장학금 안내(문의: 학생지원과 032-835-9260)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장학금 세부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홈페이지 URL: <https://bit.ly/2H1TYef>
 - 홈페이지 경로: www.inu.ac.kr 접속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 - 「장학금」
- ※ 상기 교내 장학금은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2024학년도 입학 시 변경될 수 있음

4. 기숙사 안내(문의: 생활원 032-835-9810~3, <http://dorm.inu.ac.kr>)

가. 개요

-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는 3개동 9층/13층(946명 입사)규모, 제2기숙사는 2개동 12층/15층(1,130명 입사)규모, 제3기숙사는 2개동 12층(1,000명 입사)규모이며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과 참다운 교육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나. 입사 신청 및 선발방법

- 매 학년도 1학기 인천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받아 총점(성적점수+별점+거리점수+주민등록 이전 가산점)순으로 선발 ※ 전입신고 서약 후 전입신고(정기입사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강제퇴사
- 입사기간은 24주(학기+방학), 16주(학기)로 입사 신청 시 개인이 선택
- 1학년 1학기는 단과대학별 선발인원을 배정하여 선발(수시합격자, 정시합격자 구분 선발)
 - ※ 2학기부터는 단과대학별로 배정하지 않고 총점 순으로 선발
- 기숙사 합격 후 기숙사 사용료 미납 또는 납부 후 입사 포기 시 해당학기 입사 불가(학기 중 추가선발 시 제외)
- 1학기 입사자는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시 2학기 입사 보장 단, 1학기 추가선발(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는 입사 보장 제외

다. 기숙사 사용료(2023학년도 기준)

• **24주: 학기(16주)+방학(8주)**

단위: 원

구분	관리비	시설보증금	공공요금	합계	비고
제1기숙사	2인실	1,140,000	-	1,140,000	식비 별도
	4인실	690,000	-	690,000	
제2, 3기숙사	2인실	960,000	60,000	1,260,000	

• **16주: 학기(16주)**

단위: 원

구분	관리비	시설보증금	공공요금	합계	비고
제1기숙사	2인실	760,000	-	760,000	식비 별도
	4인실	460,000	-	460,000	
제2, 3기숙사	2인실	640,000	60,000	8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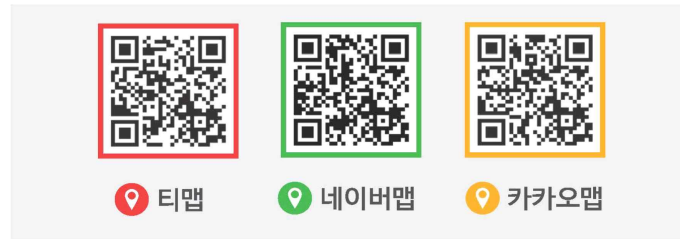
- 기숙사 사용료는 변경될 수 있음
-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 제2, 3기숙사 시설보증금과 공공요금은 퇴실 시 시설파손 여부 확인/공공요금 정산 후 추가징수 또는 환불됨
- 공공요금 및 시설보증금 미납 시 강제퇴사 됨(납부 방법: 공지 참고)

라. 기숙사 시설현황

- 기숙사의 공용공간에는 식당, 편의점, 세미나실, 세탁실, 간이취사실, 공용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 기숙사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축구공, 탁구라켓 등 운동 기구들은 생활원 통합행정실(제1기숙사 1층)에서 대여 가능

5. 캠퍼스 안내

가. 오시는 길 안내



나. 캠퍼스맵(송도캠퍼스)



- | | | | | |
|----------------------|--------------|------------------------------|------------------|-----------|
| ① 대학본부 | ⑥ 학산도서관 | ⑬ 사회과학대학
글로벌정책대학
법학부 | ⑧④ 제1기숙사 | ⑳ 학군단 |
| ② 교수회관 | ⑦ 정보기술대학 | ⑭ 경영대학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동북아물류대학원 | ⑧⑤ 제2기숙사 | ㉓ 강당·공연장 |
| ③ 홍보관 | ⑧ 공과대학 | ⑮ 인문대학 | ⑧⑥ 제3기숙사 | ㉔ 전망타워 |
| ④ 정보전산원(BM컨텐츠관) | ⑨ 공동실험실습관 | ⑯ 예술체육대학 | ⑲ 산학협력단 | ㉕ 어린이집 |
| 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 ⑩ 게스트하우스 | ⑰ 학생회관 | ㉚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 ㉖ 온실 |
| | ⑪ 복지회관(학생식당) | | ㉛ 체육관 | ㉗ 제2공동실습관 |
| | ⑫ 컨벤션센터 | | | ㉘ 도시과학대학 |
| | | | | ㉙ 생명공학부 |

X. 각종 서식

서식 1

인천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유형구분		①재외국민() ②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③북한이탈주민()																									
지 원 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학력사항	국가: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졸업(예정)																								
		국가: 년 월 일 ~ 년 월 일	()중학교 ()년 졸업																								
		국가: 년 월 일 ~ 년 월 일	()초등학교 ()년 졸업																								
	지원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대학 학부(과) 국 적 </div>																									
주 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모집단위 코드번호 </div>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병역사항	① 미필(제1국민역) ② 면제(제2국민역) ③ 예비역 ④ 여학생 ⑤ 기타(외국인) ⑥ 현역																										
추가 연락처	연락처 1																										
	연락처 2																										
전형료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성명 _____ (서명)</p> <h2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대 학 교 총 장 귀하</h2>																											

인천대학교 종합기록표

지원자	지원학과(학부)				성명				수험번호			
최종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1. 출신 초·중·고·대학 재학기간

※ 초, 중, 고, 대학/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재학한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학기를 표기/(해당자만) 대학교는 학교명, 학교소재지, 재학기간만 기재

구분	학교명	학교소재지		학년별 재학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국가명	지역명	시작일 (입학/등록)	종료일 (졸업/종료)	재학기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개월 개월																																
											총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2. (재외국민(정원외2%)만 작성)부모 해외 거주 및 근무기간 기록(지원자의 중·고교(7~12학년) 재학기간 기준)

가. 경력/재직증명서 기준 외국 근무 기간

구분	근무기간	근무국가
부모 중 근무자 성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부모 중 근무자 성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 거주 기간

구분	거주기간	거주국가
부(父) 성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모(母) 성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지원자 성명: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3. 특이사항(외국학교의 학기제도(1년 2학기제 또는 1년 4학기제 등), 외국학교로의 입학/전학/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조정사항, 중복수학, 일반, 조기졸업 등 각 교육과정 이수 시 발생한 특이사항을 작성)

초등학교(1~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	(해당자만) 대학교
-------------	------------	---------------	------------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전형료 환불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환불 자격 관련 내용(국가보훈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정보)	전형료 환불 업무	10년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형료 환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지원사항(전형, 모집단위), 지원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휴대전화번호, 환불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입학업무처리	10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형료 환불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휴대전화번호	
모집단위	학과(부)		
자격 구분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정원외2%)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제외)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환불 요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환불 계좌 정보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환불 계좌 작성 바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첨부서류

1. 환불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2. 자격별 증빙서류
 - 가.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 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지원자 기준)
 - 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해당 서류(행정복지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제출

환불금액: 납부한 전형료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공제 후 환불

위 환불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천대학교 총장 귀하



LETTER OF CONSENT
SPRING, 2024

※ 외국고교 졸업한 최종합격자만 제출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Bldg.#1-101 Academy-ro 119, Yeonsu-gu, Incheon, Korea (22012)

Phone +82-32-835-9277, Fax +82-32-858-7141

e-Mail inuao@inu.ac.kr

SUBJECT: REQUESTING STUDENT INFORMATION (LETTER OF REQUEST)

The applicant has been admitted to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or the Spring Semester of 2024. The documents he or she submitted indicate that he or she previously attended your school. Yet for the sake of the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of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is or her documents must be confirmed. Included are his or her brief personal data along with photocopies of the documents he or she submitted to us.

We would deeply appreciate if you could verify the documents and let us know the results by mail or e-mail above.

STUDENT RELEASE OF INFORMATION AGREEMENT / TO BE COMPLETED BY THE STUDENT

By making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Undergraduate Programs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 hereby authorize administrator or other persons to confer with others to obtain and verify my credentials and qualifications as a provider.

I release from any and all liability all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who act in good faith and without malice to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I consent to the release by any person to other institutions of all information that may be relevant to an evaluation of my credentials and qualifications and hereby release any such person providing such information of any and all liability.

Name		Date of Birth	DAY MONTH YEAR
Name of School		Website	
School e-mail		School Phone	
School Address	SAMPLE		Country ()
Signature			

VERIFICATION REQUEST /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OFFICIAL USE]

Student's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Comments: 온라인 원서 접수 시
Period of Enrollment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Comments: 입력 후 출력-서명-제출
Date of <input type="checkbox"/> Graduation <input type="checkbox"/> Transfe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Comments:

VERIFIER INFORMATION /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Name		Position	
Affiliation		e-mail	
Phone Number		Fax Number	
Signature		Official Stamp	
Date	DAY MONTH YEAR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최종합격자만 제출(노란색 부분만 기재)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1)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부터(from) ... 까지(to)

용도 (Purpose) **본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재검증**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연락처 (Phone No.) 032-835-0000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천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대학본부 1호관 101호)

Tel. 032-835-0000 Fax. 032-858-7141

admission.inu.ac.kr
